漁港消息

발행겸 편집인 孫井植
인쇄인 金在克
社團法人 韓國漁港協會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동98
TEL. 544-0610
544-0611
FAX. 544-0611
月刊 : 비매품
등록번호 : 라3459
등 록 일 : 1988년2월19일

會訓
● 誠實 ● 奉仕 ● 創意

漁港基盤 擴充으로 福祉漁村건설

漁港工事施工評價기준制定

技術水準向上策으로 10億원이상工事대상

最終評價 다음해 4月以內에 優秀공사表彰키로

수산청은 지난 4월 26일 수산청소관 어항건설공사의 기술수준향상과 품질확보 및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어항공사 시공평가규정을 제정, 공포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시공평가는 수산청에서 발주한 어항공사중 도급액을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인 공사(단순준설공사는 제외)와 이를 시공한 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완공어항에 대한 최종평가는 익년도 4월이내에, 준공평가와 시공중평가는 당해 연도사업의 준공검사 및 기성검사에서 실시토록 하고 있다.

또한 최종평가는 시공중평가 40%와 준공시평가 60%의 범위내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수산청은 우수하게 시공한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 및 시공업자를 표창토록 추천하고,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 시정하거나 상당한 경고를 해야한다.

한편, 이 규정은 90년도최종평가시 89년도시공사업에 대한 시공중평가는 생략토록하고 있다.

入札유의서 改正 豫會令 後續조치

재무부는 예산회계법시행령개정 후속조치로 5월 8일 공사입찰유의서를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공사입찰유의서에는 종전의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한다」가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로 또한 낙찰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낙찰취소조치를 받게 되는등 유의서 전반에 걸쳐 그 내용이 수정 보완됐다. (2면에 전문게재)

〈5. 21 현재〉 '90어항공사계약현황 (단위 : 천원, m)

항 명	예 산 액	도급액 (관급시멘트 제외)	물 량
모슬포	2,500,000	1,947,000	서방파제 50
격 포	3,000,000	2,621,000	북방파제 182
소흑산도	2,000,000	1,805,500	방파제 54
현 포	2,000,000	1,750,100	북방파제 54
위미마계	3,500,000	2,845,600	동방파제 90
안구덕	2,500,000	2,195,320	북방파제 187, 남방파제 30
산정자	1,500,000	889,570	북방파제 98, 물량장하부 30, 호안하부 30
국동지	3,000,000	2,474,395	북방파제 30, 남방파제 110 물량장 262, 상부 58
욕지홍	2,200,000	2,054,000	남방파제 138, 물량장하부 155 호안하부 55
안대진	2,400,000	1,775,740	물량장상부 250, 하부 380 돌제 78, 상부 22
사지세포	2,400,000	2,153,730	서방파제 본강 120, 상부 25 하부 30, 물량장상부 97
소안건	3,000,000	2,687,520	서방파제 상부 22, 물량장 하부 370
물애월	2,000,000	1,493,118	북방파제 80, 남방파제 90
안도	2,000,000	1,897,900	방파제 126, 방사제 80
축산	500,000	471,000	방파제 상부 34, 두부 1식, 하부 98, 선착장부두 1식
장호	2,000,000	1,887,000	북방파제 175, 상부 125, 서방파제58
외연도	3,500,000	3,212,300	북방파제상부 105, 하부 92
방어진	2,900,000	1,907,200	물량장상부 105, 동방파제 90
서망	600,000	548,000	동방파제 보강 100
	770,000	279,400	물량장 39, 방파제보강
	580,000	260,900	방파제 보강 97
	900,000	789,300	방파제 120
	1,200,000	1,135,100	물량장 437, 상부 249
	2,500,000	1,841,000	북방파제상부453, 남방파제60, 하부62

(총30개항중 24개항 계약 완료)

副會長등 任員改善

韓國漁港協會 銓衡委員會개최

한국어항협회는 지난 2월 21일의 정기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부회장과 감사, 이사의 선임을 전형위원회에 위임함에 따라 5월 23일 상오 11시 본회의실에서 임원선출을 위한 전형위원회를 개최하고 임원중 일부임원을 개선했다.

전형위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본인의 취임승락에 따라 금년 6월 3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이날 새로 구성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부회장=최상옥(남화토건∧주∨·대표이사), 최봉령(조흥공영∧주∨·대표이사), 양성후(세기건설∧주∨·회장), 박성태(성보건설산업∧주∨·대표이사), 고재철(금광기업∧주∨·회장), 정덕용(∧주∨삼건사·대표이사), 조창구(대한조경공사·회장)씨.

▲감사=송재성(∧주∨성호·회장), 이정식(한국어선협회·전부이사)씨

▲이사=신경식(입광토건∧주∨·대표이사), 김낙법(신우건설∧주∨·대표이사), 전기설(∧합∨대한토건사·대표이사), 임봉기(신풍건설산업∧주∨·대표이사), 최순남(광남개발∧주∨·대표이사), 김태엽(남진건설∧주∨·대표이사), 윤승기(상호산업∧주∨·대표이사), 김인환(효성중공업∧주∨·대표이사), 이환법(∧주∨대영엔지어링·대표이사), 이종만(조흥공영∧주∨·부사장), 유간섭(∧주∨세일종합기술공사·부사장), 구청서(∧주∨삼건사·전부이사), 이수인(대형기저수협·조합장), 장순복(인천시수협·조합장), 이동원(해운한만청), 조흥제(수산청·어항과장) 최재양(수산청·시설과장)씨

韓國漁港協會창립3周年

漁港발전 寄與하는 團體로 뿌리를내려

孫井植회장 인사말씀

친애하는 회원사, 회원조합대표, 그리고 회원 여러분.

어항개발의 촉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 어항인의 지식향상과 공동이익증진 및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국어항협회가 창립된지 벌써 3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뜻깊고 기쁜 날을 맞아 그동안 협회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회원 여러분과 관계기관의 모든 분께 충심으로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항개발과 관리라는 막중한 사명감 앞에 무모하리만큼 오직 의욕 하나만으로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어항업계에 나름대로 어항인의 목소리와 위상을 갖기 위해 출발했던 저희 한국어항협회가 창립 초창기의 어려움을 딛고 불과 3년만에 어항발전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대변하는 유일무이한 단체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음을 돌이켜 볼 때 실로 벅차오르는 감격과 감회를 억제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항업계를 감싸고도는 주변 정세와 기류는 자만과 자기도취에 빠지기엔 여러모로 아직 이르다는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가도록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어항법개정문제를 비롯하여 연근해어민들의 숙원사항인 항간거리단축문제와 지정어항확대문제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장 시급한 어항투자예산확대문제 등이 이에 대한 극명한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협회 역시 이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올해를 한국어항협회 도약기로 삼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어항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이러한 난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립3주년을 맞아 회원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야말로 협회의 기능과 어항인의 위상을 한 단계 높여 정립할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우리가 서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배전의 전폭적인 지지와 참여를 아끼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적으로도 그동안 초고속 성장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계층간의 갈등이 현예화됨에 따라 이러한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총체적 결집과 새로운 사회질서를 호소하고 있는 이때 어항인들의 역량을 모아 단합된 모습을 대내외에 과시하며 모범을 보인다면 「어촌정주권개발로 복지어촌건설」이란 협회의 장기목표 달성은 그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우리의 한결같은 소망인 이상어항도 빠른 시일내에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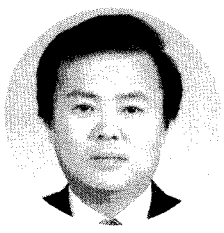

친애하는 어항인 여러분.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한국어항협회는 바로 여러분의 단체인 동시에 여러분의 것이며 나아가 우리의 한결같은 소망인 이상어항도 빠른 시일내에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친애하는 어항인 여러분.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한국어항협회는 바로 여러분의 단체인 동시에 여러분의 것이며 나아가 우리의 한결같은 소망인 이상어항도 빠른 시일내에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特殊法人으로 法的設立 근거마련

漁港人底力을 誇示해야

個人·利己主義과감히 拂拭

第7次經濟社會發展計劃에 漁港발전方案적극反映

법인으로서의 협회 설립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되고, 각종 수익성사업을 유치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인다면 머잖아 이러한 협회 본연의 의무를 실증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더욱이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92년부터 시작될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는 그동안 어항인들이 꾸준히 추진해 왔던 모든 현안이 구체적으로 입안되고 반영되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청사진이 포함되어 있어 협회 활성화의 속도를 단 한순간이라도 늦춰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는 절박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협회운영에 어항인 여러분의 좀더 많은 관심과 좀더 깊숙한 참여의 당위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어항협회는 창립3주년을 계기로 도약하는 90년대를 맞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수동적이며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 우리의 목표와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해야만이 수산업의 장래나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버려야 할 구시대적 유산인 팽배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우리 어항인들만이라도 척결하고 진정으로 나와 사회와 국가를 모두 이롭게 하는 새역사를 창조하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의 이 결단이 수산대국을 향한 힘찬 거보(巨步)임을 모두 통감하고 어항인의 위대한 저력을 대내외에 과시하도록 합시다.

끝으로 한국어항협회 창립3주년을 계기로 회원여러분의 협회로서, 회원 여러분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것을 재삼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動靜

▲윤옥영수산청장은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70세이상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60여명의 직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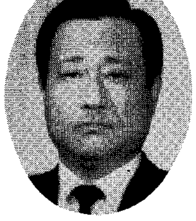

▲윤옥영수산청장은 5월 17일 군산대신조선소를 방문、어업지도선 「부산 204호」 취항식에 참석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국립수산진흥원은 4월 19일부터 5월4일까지 부산항해양자료5백년 전시회를 열었다。1474년부터 1977년까지 5백년동안의 부산항해양자료에는 1474년의 「부산포」에 대한 자료등 26점이 전시되었다。

▲홍종문수협중앙회장은 지난 4월26일정오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국회농림수산위원을 비롯 수산관련인사를 초청、회장취임기념리셉션을 가졌다。

▲홍종문수협중앙회장은 5월11일 농림수산부에서 개최된 외청 및 산하단체장회의에 참석했다。

▲손정식한국어항협회장은 5월17일 한국수산회가 주최한 조찬간담회에 참석、윤옥영수산청장을 비롯 수산관계인사들과 수산업발전을 위한 교례를 했다。

확장

▲성보건설산업주식회사(대표이사・박성태)는 최근 사세확장으로 전화를 증설(511ー7251~5)하고 5월18일 사무실을 확장했다。또한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각현장에 FAX를 설치하는등 그동안 준비해온 전산시스템을 본격화해 나가고 있다。

취임

▲부산공동어시장 원태어 회장 취임식이 5월1일 당어시장에서 거행됐다。

改正『工事入札유의서』〈全文〉

都給限度額 초과하면 入札無效
期限内 해당書類제출안할땐除外

재무부가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 후속조치로 지난 8일 개정 공포한 예규중「공사입찰 유의서」 전문을 본지에 게재코자 한다('——'은 개정부분임)
〈편집자 주〉

공사입찰유의서

(회계예규 2200. 04−102−10, 1990. 5. 8)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가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입찰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 지정된 기간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계관서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정부소정서식) 1통
2.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원본제시) 또는 자격등록증 사본 1통
3. (삭 제)
4. 인감신고서 1통
5. 기타 공고로서 요구하는 서류

제 3 조(현장설명)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 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법시행령 제4조,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전기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조의 2(설계서의 열람등) ①입찰자는 제3조의 현장설명시 입찰금액의 산출 및 공사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열람하여야 하며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 및 동 물량에 대한 단가산출을 위하여 세부적으로 정한 설명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설계서를 배부받아야 한다.
②입찰자는 설계서를 배부받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4 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3, 대안입찰 또는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있어서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2로 한다)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한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유가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 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제조합 또는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사업단체가 발행하는 각 보증서
5.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보증금예치증서
②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③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계약사무처리규칙 제5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괄보증의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국고귀속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일괄입찰보증제도 운용요령"에 의한다.

제 5 조(입찰) ①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참가승낙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수첩등의 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면허수첩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원 이상에 한하여 그 대리인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④예산회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⑤입찰 및 입찰대리위임장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시에 제출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제 6 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입찰서(제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받은 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 7 조(입찰서의 제출등) ①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서는 입찰공고등에서 허용하고 있을 때에는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④제3조의 2 제1항이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에 있어서는 그 입찰 또는 개찰시에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받은 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가 입찰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 토목공사를 포함한 복합공사에 있어서 토목공사 이외의 부분에 대한 산출내역서는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그 부분에 관하여는 입찰시의 산출내역서에 총액으로 따로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 이외의 공사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에 붙이는 토목공사에 있어서 그 낙찰자는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그 입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공사를 기준으로 입찰하고 제4항 후단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제출시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삭 제)

제9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이 유효인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0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시에 제출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11.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의 입찰(이하 "총액단가입찰"이라 한다)에 있어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2. 총액단가입찰에 있어서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받은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물량중 주요부분을 누락 또는 변경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
13. 각 공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도급(수급)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의 입찰
14. 제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제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제11조(낙찰자의 결정) ①유효한 입찰자중 정부에서 정하는 예정가격 이하인 최저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시행령 제9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으로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직접공사비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입찰일로부터 3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내에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자는 낙찰자결정에서 제외된다.
1. 당해입찰금액으로 입찰한 이유 및 그 금액으로 당해공사의 시공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낙찰자결정은 시행령 제99조제1항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공사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총공사 낙찰금액(시행령 제111조 내지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공사 및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⑤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현장설명사항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13조(입찰의 연기등) ①정부는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그때에는 그 사유와 연기일시를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에 붙일 수 있다.

제 14 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삭 제)

제16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정부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부로부터 당해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 17 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를 작성・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13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사실이 있는 자도 또한 같다.

제 19 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관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참고사항)
1 이 회계예규는 1990. 5. 8부터 시행한다.
2. 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 04−102−9 "시설공사 입찰유의서"를 회계예규 2200. 04−102−10 "공사입찰유의서"로 한다.

하자責任期間, 工種別區分적용

複合工事서區分이明確한境遇 基準합리화

복합공사에 있어서 공종(工種)간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한 경우에는 공종별로 구분하여 하자책임기간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재무부가 5월 8일 공포한 계약사무처리규칙개정령에 따르면 복합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준의 합리화를 위해 종전에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된 공종을 기준토록 되어있는 것을 고려 앞으로는 각 공종간 하자책임구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주된 공종을 기준토록 했다.

제한경쟁입찰의 경우는 입찰참가자격의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10억원이상되는 공사 △특수한 기술 및 공법을 요구하는 공사 △지역제한의 경우등 제한사유내의 제한사항을 중복적, 선택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여 계약의 경쟁성을 높였다.

부정당업자에 대한 참가자격 제한에 있어서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범위안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상참작, 경감범위를 축소했다.

先進漁港 2次視察團모집

日、台、香港에 11月初 출발

한국어항협회는 선진국의 어항실태와 현황을 직접 현지에서 살펴 봄으로써 새로운 정세의 어항역할과 어항개발 및 기술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코자 제2회 해외선진어항시찰단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시찰단은 8박9일에 걸쳐 일본, 대만, 홍콩등 선진어항을 시찰할 예정이다.

•시찰기간：90·11·6~11·14(8박9일)

•시찰어항：〈일본〉하가다어항(博多)、켄가이어항(玄界)、신나가사끼어항(新長崎)、노모어항(野母)、아구내어항(阿久根)、에노구찌(江口)、이도만어항(糸満)、기노만(宜野灣)과 〈대만〉 대북기륭항、팔덕어항、〈홍콩〉 아비던어항

•참가대상：희망자(회원 및 어항인우선)

•소요경비：각자 자부담

가、1인당：1백57만6천3백40원

1)신청금：30만원(9·30까지 납부)

2)：1백27만6천3백40원(10·20까지 납부)

나、본회 구좌번호

1)주택은행 언주로지점：482601-88-205150

2)수협 논현동지점：039-01-2553

•신청마감：90·9·30

•기타 사항은 본회로 문의。

漁港공사 特殊條件조정

22個項을 8個項으로 危險負擔은存續시켜

수산청은 어항공사계약특수조건을 개정, 금년도 발주공사부터 시행키로 했다.

수산청에 따르면, 조달청이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이 중복되는 것과 도급자에 불리한 불공정거래특약을 삭제요청함에 따라 특수조건 22개조항중 중복부분을 삭제, 8개항으로 조정하는 한편 불공정거래특약중 위험부담은 어항공사의 특수사정을 감안 계속 존속키로 했다. 또한 감액 또는 환불은 발주처와 도급자 쌍방의 착오가 인정되는 경우 정산처리토록 했다.

第3回 漁港寫眞公募

많은應募 바랍니다

어항문화의 창달을 통하여 어항에 대한 새롭고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어항개발의 촉진과 효율적인 관리로 어촌정주환경에 기여하고자 한국어항협회에서는 올해도 어항사진을 공모합니다.

본회 회원、어항관련종사자 및 수산인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이 어항사진공모에는、어항을 중심으로한 수산관련 모든 작품을 출품하시면 됩니다.

출품을 원하는 분은 사진뒷면에 작품명、직장、성명을 기재하여 오는 10월 31일까지 한국어항협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응모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가자격：본회회원、어항관련 종사자 및 수산인

■출품대상：어항을 중심으로한 수산관련 모든 작품

■종류 및 규격：흑백 및 칼라 4×5이상

■출품점수：제한없음(뒷면에 작품명、직장、주소、설명기재)

■출품처：사단법인한국어항협회

■출품기한：90년4월1일~10월31일까지

■작품심사 및 입상작품발표

①심사：심사위원은 사계권위자로 구성、업격심사를 거쳐 금상1점、은상1점、동상2점、가작5점 선정

②발표：12월 어항소식 및 어항지 겨울호에 발표

■상패 및 상금

·금상：상패、20만원

·은상：상패、15만원

·동상：상패、10만원

·가작：상패、

·시상：90년 12월중(개별통지)

■기타：출품작품은 본회에 귀속、어항지·어항소식에 게재。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98번지 사단법인 한국어항협회。135-010

기금기탁

〈2면에서 계속〉

▲이상철(대성특수제지주식회사 대표이사)：금일봉 ▲황열성씨(대한보증보험성경총괄대표)：금일봉 ▲김동원씨(주식회사동아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금일봉 ▲황대흠씨(주식회사해양유통 대표이사)：금일봉 ▲김신호씨(홍한수산주식회사 회장)：금일봉 ▲임승언씨(주식회사한국항공 감사)：금일봉 ▲김일재씨(주식회사법신기획 대표이사)：금일봉 ▲서용석씨(제일상사 사장)：금일봉 ▲이응규씨(한국경영법철학연구원 원장·교수)：금일봉 ▲차주환씨(경원대학 교수)：금일봉 ▲김홍배씨(대한통운주식회사 상임감사)：금일봉 ▲임중재씨(인천교역상사 대표이사)：금일봉 ▲김기수씨(인간문화재)：금일봉 ▲임성재씨(정일금속 대표)：금일봉 ▲안창수씨(법제처 법제기획관)：금일봉 ▲윤석환씨(주식회사한샘여행사 전무이사)：금일봉 ▲백운영씨(신일학원 이사장)：금일봉 ▲정성훈씨(백병원 이사)：금일봉 ▲육종채씨(청수화학공업사 대표)：금일봉 ▲정척희씨(주식회사방산정밀화학 회장)：금일봉 ▲전기원씨(주식회사태림토건 회장)：금일봉 ▲이종섭씨(수협중앙회서울공판장)：금일봉

창립기념

▲삼부토건주식회사는 창립35주년기념일을 맞아 5월13일 기념행사 및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효성중공업주식회사는 5월12일 창립28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출장

▲최상옥남화토건주식회사 대표이사는 5월5일부터 5월20일까지 광주상공인 미주순방차 출장

당선

▲제주시수협조합장에 홍성보씨(전이사)가 5월8일 무투표 당선됐다.

화촉

▲이동배전수산청장의 차녀 미경양이 5월24일 12시반, 압구정동 광림교회에서 화촉을 밝혔다.

▲수협중앙회홍보실 박진해씨(본회편집위원)의 차남 준순군이 5월19일 오후1시 비원앞 신혼예식장에서 화촉을 밝혔다.

개점

▲수협중앙회는 5월11일 서울강서구화곡5동 화곡제2주공아파트단지에 화곡출장소를 개점했다. 전화：695-7176

인사

▲수협중앙회는 5월16일자로 부장급인사를 단행했다. △총무부장 김만종(자재부장) △조사부장 이종률(조사부장직대) △지도부장 이성찬(종로지점장) △자재부장 김기석(저축부장) △유통부장 민춘식(선거관리본부장) △판매사업부장 김행권(장안동지점장) △무역부장 김석송(영등포지점장) △저축부장 고석희(신탁증권부장) △영업부장 정철석(경기도지회장) △신탁증권부장 이명의(충남도지회장) △경기도지회장 어윤기(지도부장) △강원도지회장 허인구(판매사업부장) △충남도지회장 김도원(유통부장) △전남도지회장 이양우(총무부장) △경남도지회장 김동휘(강원도지회장)

회비납부

■단체

〈분담금〉

▲아남건설주식회사(김규은 대표이사) ▲주식회사삼건사(정덕용 대표이사) ▲영생건설주식회사(배환갑 회장) ▲조흥공영주식회사(최봉령 대표이사) ▲상호산업주식회사(윤승기 대표이사)

〈연회비〉

▲추자도수산업협동조합(박동기 조합장)

■개인

〈연회비〉

▲전기원씨(주식회사태림토건 회장) ▲서용석씨(제일상사 사장) ▲김용하씨(주식회사우주종합건설 토목부장)

내방인사

▲현인수씨(주식회사우주종합건설 현장대리) ▲원강희씨(수산청 어항과) ▲배길중씨(수산청 어항과) ▲조사연씨(수산청 여수어항관리사무소) ▲김재극씨(주식회사문원사 대표이사) ▲조우연씨(수산청 협동조합과장) ▲김영우씨(조달청계약과) ▲박진해씨(수협중앙회 홍보실) ▲윤석환씨(주식회사한샘여행사 전무이사) ▲안중철씨(수협중앙회 부회장) ▲민병렬씨(임광토건주식회사 상무이사)

創立3周年을 祝賀합니다.

光南開發株式會社 代表理事 崔順男
金光企業株式會社 代表理事 高濟哲
南進建設株式會社 代表理事 金泰業
南和土建株式會社 代表理事 崔相玉
合資會社 大韓土建社 社長 全己燮
株式會社 三建社 代表理事 鄭德容
三扶土建株式會社 代表理事 趙南煜
相互産業株式會社 代表理事 尹昇基
盛宝建設産業株式會社 代表理事 朴星泰
株式會社 成鎬 會長 宋在成
世紀建設株式會社 會長 梁性厚
信友建設株式會社 代表理事 金樂範
新豊建設産業株式會社 代表理事 金東漢
亞南建設株式會社 代表理事 金圭銀
永生土建株式會社 會長 裵還甲
株式會社 宇宙綜合建設 會長 高世鎭
林光土建株式會社 代表理事 申庚植
朝興工營株式會社 代表理事 崔鳳岭
曉星重工業株式會社 代表理事 金仁煥

〈가나다순〉

社團法人 韓國漁港協會

어·항·교·실

漁港計劃樹立의要領

〔12〕

방 파 제

3. 항구부(港口部)

항구(港口)는 황천시에 있어서도 어선이 안전하게 항행될 수 있는것이 필요하다

(1) 항구의 위치와 방향

1) 황천시에 있어서도 어선이 항구를 용이하게 볼수 있도록 육안(陸岸)에서 가급적 떨어져서 설치하여야 한다. 또 항구의 목표가 되는 자연의 지형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유효하게 이용한다.

2) 항구는 파도가 집중되지 않는 곳에 설치 하여야 한다.

3) 부근에 암초나 얕은곳이 있는 곳은 항구를 설치하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4) 항구는 가급적 쇄파대(碎波帶)의 외측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항구의 방향은 항내의 정온도에 크게 영향이 미치므로 파도, 조류, 바람등의 자연조건을 충분히 조사하고 최다·최강의 파도방향에서 딴 데로 돌리는등 가장 효율적으로 소요되는 정온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한다.

6) 항구의 방향은 어선이 출입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어선이 파랑에 대하여 충분히 안전항행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또 항구의 위치, 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지선이용자의 의견을 참고함과 아울러 현지의 항구계획개소에 부표등을 띄우고 실제로 어선을 출입시켜 보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항구의 폭

1) 항구폭은 어선의 통행면에서 볼때는 넓은 것이 좋으나 항내정온도의 면에서는 좁은것이 좋다는 상반된 성질을 갖고 있다. 여기에서 항구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선이 충분히 안전하게 입출항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항구폭을 좁히고 정온도 향상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2) 항구의 폭은 항로폭보다 넓게 잡는 것이 필요하다. 항로폭은 어선폭의 5~6배 필요하기 때문에 항구폭은 여기에 여유를 더한 것이라야 한다.

3) 파랑이 큰지역의 항, 조류가 격류인 지역의 항 또는 어선이 항내엔 들어가면 곳 방향을 바꿔야하는 항등에 있어서는 어선이 안전하게 입출항 할 수 있도록 항구폭을 통상보다 넓게할 필요가 있다.

(3) 항구부 부근의 방파제 형상

항구부 부근의 방파제 형상은 항내 및 항로의 정온도를 향상시키고 어선의 출입항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연구하는 경우가 있다.

1) 주방파제를 길게 연장한다. 이것은 격랑방향의 파도를 차단하고, 항내의 정온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항로를 정온토록 하고 항로법선(航路法線)을 원활하게 하고 또한 항구의 수심을 깊은곳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어선의 안전항행을 기대할 수 있다.

2) 주방파제의 선단부를 바다쪽으로 꾸부린다. 이 경우의 목적도 앞의 1)과 같다.

3) 도제(島堤)를 설치한다. 격랑방향의 파도이외의 부차적인 파도가 강한 경우 도제를 배치하게 됨에 따라 방파제 배치를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고 항내의 정온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다. 다만 어선은 조선(操船)하기가 어려우므로 항로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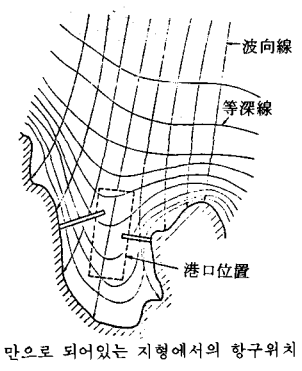

만으로 되어있는 지형에서의 항구위치

(港口附近의 主防波堤 形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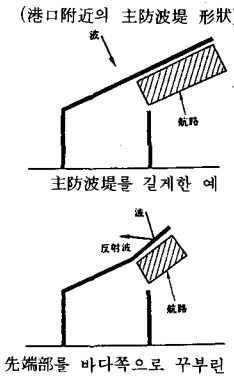

主防波堤를 길게한 예
先端部를 바다쪽으로 꾸부린 예

(島堤의 設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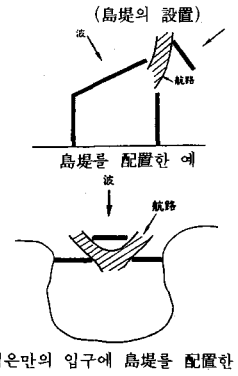

島堤를 配置한 예
적은만의 입구에 島堤를 配置한 예

뱀 장 어

보신용 양념구이 인기
양식산도 영양은 같아

건·강·하·게·삼·시·다

뱀장어는 우리나라와 일본에는 부화직후부터 성어가 될때까지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뱀장어의 생김새는 상어와 비슷하다. 몸은 가늘고 길며 배지느러미가 없고, 뒷지느러미, 등지느러미, 꼬리지느러미가 완전히 붙어 있다. 몸빛은 보통 푸른빛을 띤 담흑색이지만 아주 누런빛을 띤 것과 같은 빛을 띤 것 등 여러가지이다.

뱀장어는 민물에서 5~12년간 살다가 8~10월경에 알을 낳기 위하여 바다로 내려가 난류를 따라 높은 수온(16~17℃)과 높은 염분을 가진 심해(深海)에서 알을 낳는다.

부화된 치어는 난류를 따라 서 오랜 시일을 거쳐 (1~3년) 대륙연안에 다다른다. 이때의 자어는 백색투명한 대나무 잎과 모양이 비슷하므로 댓잎뱀장어라고 부른다. 이 자어가 하구에 가까와지면 변態하여 흰실뱀장어가 되어 강으로 오르기 시작한다. 그후 흑색실뱀장어, 피리뱀장어, 메소뱀장어 순으로 성장하여 성어가 된다. 수명은 10년~15년이다.

뱀장어는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보신용으로 인기가 있어고아 먹기도 하고 보통 식당에서는 양념구이가 인기가 있다.

뱀장어의 맛성분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를 간추려 보면 유리아미노산으로는 리진의 함량이 가장 많아 육 100g 당 4mg으로 전체 유리아미노산량의 25%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글리신, 알기닌, 알라닌, 히스티딘 및 프롤린 등의 함량이 많았다.

핵산관련물질로는 이노신산이 육 100g 당 78·7mg으로 다른 것에 비하여 월등히 많았고, 그 외의 성분은 비교적 함량이 적었다.

그리고 유기염기로는 크레아

틴이 육 100g 당 252·5mg으로 가장 많았고 베타인은 22·9mg이었으며, 트리메틸아민, 산화트리메틸아민은 극히 적은 양이었다.

유기산으로는 부틸산, 발레르산, 숙신산 및 프로피온산의 함량이 많았고, 옥살산, 푸말산, 말레산, 타르타르산 및 시트르산은 흔적량에 불과하였다.

관능검사결과 뱀장어의 중요한 맛성분으로는 글리신, 알라닌, 글루탐산, 이노신산, 나트륨, 칼륨, 염소 및 인산이었으며, 리진, 이소류신, 아스팔트산 및 크레아틴 등의 맛의 조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여름철 영양식(營養食)으로 뱀장어 양념구이덮밥은 맛도 좋지만 식품성분상 자양식으로 권할만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천연산과 양식산 뱀장어가 유통되고 있다.

식품성분상 천연산과 양식산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실험에서 밝혀졌으므로 공연히 천연산이라고 하여 값비싸게 팔아서도 안되겠지만 값비싸게 사먹을 필요도 없다.

또 기름지고 큰 뱀장어는 훈제품 가공원료로써 인기가 높아 유럽에 수출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하천에 올라오는 실뱀장어를 잡아 우리나라에서 양식하는 뱀장어는 단백질 및 지방의 보급원으로 우수하므로 우리 식성에 맞도록 요리하여 많이 먹도록 권할만한 식품이다.

분에넘친사치, 천박하게 보여

고급찾을만한 여유, 아직도 없다.

♣經·濟·教·室

계모임인듯 한 떼의 사모님들이 신나게 음식을 먹으며 떠들고 있다. 차림으로 보아 모두들 돈은 많고 할 일은 별로 없는 유한족들임이 틀림없다.

『얘, 이 다이야 어떻니? 1.5캐러트짜린데 우리 그이가 지난번 홍콩 출장갔을 때 사온거야.』

『이 시계는 「피아제」인데 3백만원 주고 샀단다. 가에 박힌 이 다이야를 좀 봐!』

『어머머 얘, 너 블라우스 이거 참 멋지다. 얘, 뭐니 얘, 얼마 주었니.』

『이건 진짜 「크리스챤 오르」인데, 명동에서 50만원 주고 산거야.』

몸에 지니고 있거나 입고 있는 고급품 자랑에 떠들썩하다. 외제 고급품을 한 가지라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예 대화에도 끼이지 못할 지경이다. 입에 오르내리는 물건들이 모두 세계 최고급품들이다.

남자들도 별로 다를 바 없다. 돈깨나 있는 신사로 행세하려면 시계는 최소한 「롤렉스」, 와이셔츠는 「입센 로랭」에다 넥타이는 「크리스챤 디오르」에 혁대는 「구찌」, 구두는 「발리」정도를 신어야 하는 것처럼 돼 있다.

우리보다도 훨씬 잘 사는 미국이나 일본사람들도 함부로 갖지 못하는 고급품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웬만하면 너도나도 다 가지려한다.

고급품이 물론 일반대중용보다 좋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특수층을 대상으로 소량 생산한 것들이기 때문에 값이 엄청나게 비싸다. 겉보기나 장식이 고급일 뿐 효용면에서는 비싼만큼 뛰어나지 못하다. 그래서 고급품은 그것이 꼭 필요한 사람이나 그럴 만큼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이 찾는 것이 정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다. 효용이나 경제적 형편등을 따지지 않고 그저 무엇이든지 고급품만 찾는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프로선수들이나 사용하는 고급 라켓을 이제 겨우 테니스를 배우는 사람이 겁없이 들고 다니는가 하면 낚시의 진미도 미처 알기 전에 외국제 고급낚시대부터 갖추고 본다.

값싸고 실용적이며 튼튼한 시계가 얼마든지 있는데 구태여 비싸고 관리하기 힘든 「롤렉스」를 가져야 할 이유는 무엇이며, 영화배우나 특수직업여성들이 직업상 필요때문에 비싼 돈을 들여 사갖고 주렁주렁 달고 있는 고급장신구가 집안이나 돌보는 평범한 가정주부에게 무엇때문에 필요한 것인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고급좇는 성향으로 가짜만 득시글

더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고급시계나 보석등은 모두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고급품들은 대부분 밀수품이거나 가짜가 많다.

특히 고급시계의 경우 80~90%가 가짜라는 것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밝혀져 있다.

최근 검찰에 검거된 가짜 고급시계 밀조단은 그들이 만든 가짜 시계들이 모두 전국의 백화점·시계점 등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자백했다. 고물상을 통해 구입한 낡은 시계의 부속품들을 모아 특별히 만든 가짜 고급시계의 케이스에 넣어 감쪽같이 고급시계로 둔갑시킨 가짜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고급만을 좇아 눈이 먼 사람들이 고급상품만을 보고 백여만원씩을 주어가며 가짜를 사 차고는 좋아들 하고 있는 셈이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다.

「필립파텍」이나 「피아제」니 「론진」이니 하는 고급시계들은 미국에서도 웬만치 큰 시계점이 아니면 찾아보기 힘든 고급품들이다. 일년가야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으니 대부분의 시계점에는 아예 갖다 두지도 않는 것이다. 그런 고급품이 우리나라에서는 웬만한 시계점이면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다. 시계뿐 아니라 다른 고급품들도 마찬가지 실정이다. 그만큼 고급품을 찾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다.

이제 우리 모두 우리의 분수를 알아야 할 때다.

경제가 조금 나아지고 좀 먹고 살만하게 되었다고 무엇이든 고급만 찾아서는 안될 것이다. 아직 그럴만한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다.

온 국민이 한푼이라도 절약하게 아껴 또다른 생산에 투자해야 우리가 바라는 자립경제를 이룩할 수 있고 정말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이다.

꼭 필요하지 않는 고급품,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는 사람을 더욱 천하게 보이도록 만든다.

♣經·濟·教·室